

#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589 관 련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3년 4월 24일  
제 안 자 : 보건복지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서울시에서는 이미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, 민간위탁시설(사회복지시설 포함)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, 기시행중인 통합회계감사의 절차 및 기준에 맞춰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사회복지시설의 회계감사의 절차에 대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통합회계감사의 절차 및 기준을 반영함 (안 제8조제4항).

#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4항 중 “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추천을 받아”를 “사회복지시설이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”으로, “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”를 “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

현행	개정안	수정안
	<p>수료 등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</p>	

##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이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「공인회계사법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한다. 이 경우 회계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⑤ 시장은 제4항의 회계감사 실시에 따른 수수료 등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